

Issue Monitor

디지털금융의 최전선,
전자금융업의 진화와 주요 이슈

July 2023 | 제155호



삼성KPMG 경제연구원

—
home.kpmg/kr

디지털금융의 최전선, 전자금융업의 진화와 주요 이슈

Issue Monitor | July 2023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이사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곽호경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962
hokyungkwak@kr.kpmg.com

최연경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769
yeonkyungchoi@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금융산업에 부는 디지털 혁신의 바람은 일상 속에 불어오고 있다. 과거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금융서비스 영역에 전자상거래 업체와 이동통신사, 유통사 등 비금융회사가 뛰어들면서 변화와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금융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의 진화와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업권 내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Page

Infographic Summary

3

전자금융업의 확산과 진화

4

전자금융의 발전과 전자금융업 개요

4

전자금융업에 주목하는 이유

7

전자금융업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

9

빅테크, 금융 마이데이터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서비스 영역 확장

9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출시

11

엔데믹을 환영하는 외환 관련 전자금융 서비스

14

전자금융업의 주요 이슈

16

(1) 심화되는 전자금융업 경쟁도

17

(2) 사용 편의성으로 영역 확대한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논란

20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향방은?

24

(4) 선불충전금 리스크 우려 증대... 내 충전금은 안전할까?

29

(5) 전산장애와 사이버 리스크 등의 부각

32

결론 및 시사점

34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전자금융업 환경 변화

34

적응과 변화가 필요한 전자금융업 내 이해관계자들

35

Infographic Summary



최근 전자금융업 주요 이슈



01
심화되는 전자금융업 경쟁도

비금융업자의 활발한 전자금융업 진출과 사업모델 고도화 등 높아지는 경쟁도 속 애플페이 상륙으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제기



02
사용 편의성으로 영역 확대한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논란

스마트폰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각광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율 적정성 관련 논쟁 등 지속



0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향방은?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비대면 환경 변화 등 반영 및 비금융사업자의 디지털금융 진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개정안 재논의 중



04
선불충전금 리스크 우려 증대... 내 충전금은 안전할까?

충성고객 확보, 할인·적립 혜택 등으로 선불충전금 인기 확대... 이용자 보호 우려 제기되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등 규제 강화 필요성 고조



05
전산장애와 사이버 리스크 등의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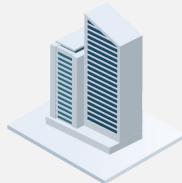
전산센터 장애, 시스템 부하, 정보 유출 등 전자금융의 IT 리스크 부각,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시장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전자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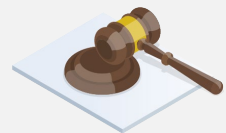
금융사

국내외 경쟁자 진입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 속 고객경험 고도화와 파트너십 전략 수정 및 차별적 서비스 마련, 전자금융사고 등 관리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함



비금융사

개인에게 최적화된 디지털금융 서비스 등 편의성, 혁신성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이용자 자금보호, 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절차 강화 등 필요



정책당국

안정적인 시장 조성자로서 복잡다기화 될 전자금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감독 체계와 인프라를 준비해야 함

전자금융업의 확산과 진화

전자금융의 발전과 전자금융업 개요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금융의 확산

‘금융산업의 빅 블러(Big Blur)’, ‘혁신의 메기’... 금융산업에 부는 디지털 혁신의 바람은 일상 속에 불어오고 있다. 오전부터 OO페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알림이 연신 울리고, 외출하며 지갑을 집에 두고 다닌 지 오래다. 금융과 디지털의 만남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초기 전자금융은 금융회사에서 수기로 종이에 기록·보관하던 고객 정보나 거래 정보를 전산화하며 금융기관의 업무 자동화에 방점을 두면서 금융기관 간 거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고,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 시대가 개막되면서 온라인 banking, 지로 등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지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편리함으로 서비스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후 2010년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발현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가져온 파급력은 상당했는데, 바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가 탄생하고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이 크게 주목 받게 됐다. 금융 포용성 확대와 산업 내 경쟁 촉진 등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완화도 이루어지며 이러한 추세는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비금융사의 기술 고도화, 플랫폼 확대 등이 이루어지며 금융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등장으로 전자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본격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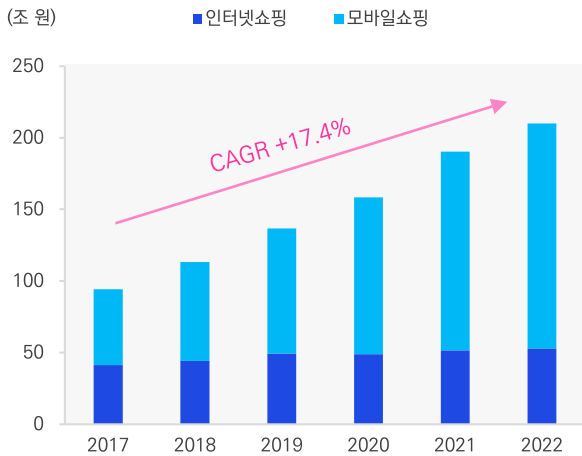
[디지털 혁신과 금융산업 구조의 변화]

	1980's	1990's	2000's	2010's	기술 발전	2020's
제공 기관	금융회사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p>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바이오 인증 등</p>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금융 서비스	금융정보화 구축	전자금융 태동	전자금융 발전	핀테크 혁신 태동		디지털 전환 진전
디지털 기술	PC	인터넷	모바일기기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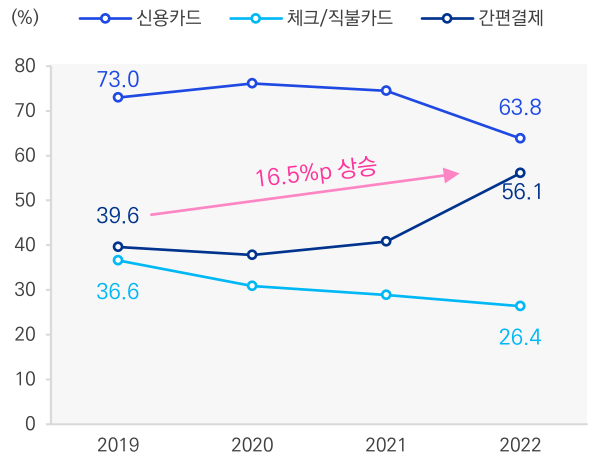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2021.8.6), '해외경제 포커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디지털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금융의 편리성과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결합되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두드러진다.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대표적 영역인 온라인 쇼핑은 거래액이 2017년 94.2조 원에서 2022년 209.9조 원으로 연평균 17.4% 증가했으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선택한 결제수단 비율은 간편결제가 2019년 39.6%에서 2022년 56.1%로 16.5%p나 상승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간편결제를 대표로 하는 전자금융 이용을 촉진하고 '전자금융 편의성 증대 → 전자금융 이용 증가 →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인터넷 쇼핑 결제수단]



Source: 국가통계포털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3.31), '202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요지표 및 심층분석'

“비금융회사,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로서 각종 페이·머니 등 편리한 서비스 출시”

비금융회사의 전자지급서비스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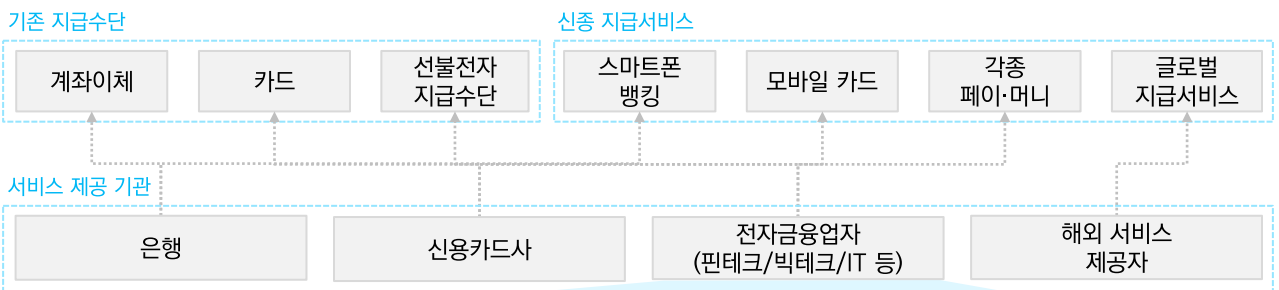
은행이나 카드사, 비금융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과정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서비스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지급인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까지의 대금 지급에 계좌이체, 실물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 도입 이후 금융 혁신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급 방식으로 각종 페이(Pay)·머니(Money), 모바일카드 등이 등장 및 확산되고 있다.

1) 전자지급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상거래나 개인간 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를 뜻함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와 이동통신사, 유통사 등 비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Gateway, PG),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Escrow),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전자화폐 등의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직불전자지급 서비스에 해당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미리 스마트폰 등 사용기기나 서비스에 등록해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와 자문 등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는 제공기관의 선불금 계정에 미리 자금을 충전하고, 거래 시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해 수취인 전자번호 및 선불금 계정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다. 동 서비스는 소비자 금융거래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B2C 서비스를 지향하는 다수의 빅테크, 핀테크, 유통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복수로 등록하여 활발히 영업을 진행 중이다.

[전자지급서비스 유형]



전자금융업 ¹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직불전자지급	전자화폐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쇼핑물 등을 대신해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 대금을 지급/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 관리·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서(예: 아파트 관리비)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구매시 스마트폰 등으로 인증을 거쳐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도록 중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Source: 한국은행(2016.2),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2022.9.21), '2022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참고하여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각 전자지급서비스 유형별 기업은 대표적인 기업이며, 한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전자지급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 중

Note 2: 전자화폐의 경우 1999년 소액결제 이용 편의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은행권과 함께 추진한 국내 최초 법정 전자화폐인 'K-Cash'가 발행되며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상 유일한 법정통화 전자화폐의 지위를 가졌으나 이용자 급감 등으로 2020년 12월 15일부로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종료

“

금융기관의 전산화 이후 대부분의 금융서비스와 관련 채널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전자적 형태를 통한 금융서비스가 일반화

”

전자금융업에 주목하는 이유

소비자 편의성 기반으로 성장하며 주류로 등극한 전자금융

전자금융은 24시간동안 시공간에 제약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금융사의 지점에 영업시간 내 직접 방문하여 금융 거래가 가능했던 방식은 이제 비대면 거래로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기반해 크게 성장한 것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을 도입하여 이용자 친밀성(User-friendliness)을 높임으로써 업무처리 절감과 같은 비용 효율성 제고, 고객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해 왔으며, 24시간 접근성은 고객의 편의성과 은행의 자원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²⁾

2022년말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는 2억 704만 명으로 전년말대비 8.5% 증가했으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 등으로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가 매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³⁾ ‘디지털’과 ‘비대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증권·보험사들도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규 고객 유치, 비대면 고객 서비스 확충 등 금융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자적인 형태를 통해 제공 및 처리됨에 따라 전자금융은 금융산업 그 자체가 되었다.

[금융기업 및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 서비스]



Source: 언론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 벤처창업연구(2011), ‘전자금융채널의 경쟁성과에의 영향 및 결정요인 연구’, Vol.6, no.2, 통권 20호

3)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는 19개 국내은행(3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및 우체국예금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등록한 경우 중복 합산),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9년 16.5% → 2020년 10.7% → 2021년 13.5% → 2022년 10.3%를 기록 (한국은행(2023.3.7), ‘2022년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

온라인 중심의 경제활동
확산으로 간편결제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한 가운데,
전자금융업의 확장성에도
주목

”

온라인 중심의 경제활동,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전자금융업 확대

경제활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은 온라인에서도 원활하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일례로 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로,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초기·핵심 단계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 중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비금융기업이 많아진 현상도 온라인 경제의 성장과 온라인 시장에서 ‘결제’ 행위 자체가 갖는 게이트웨이적인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전자금융업이 갖는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전자금융업이 단순히 새롭거나 편리한 결제 방법 정도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 결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산업이 핀테크 기술과 결합하면서 파급력이 큰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객 신용평가 고도화,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맞춤 상품 추천 등 전자금융업을 발판으로 삼은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간편결제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업의 확장성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전자금융업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

“
은행, 카드, 핀테크,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금융 마이데이터 진출하며
두각을 드러내는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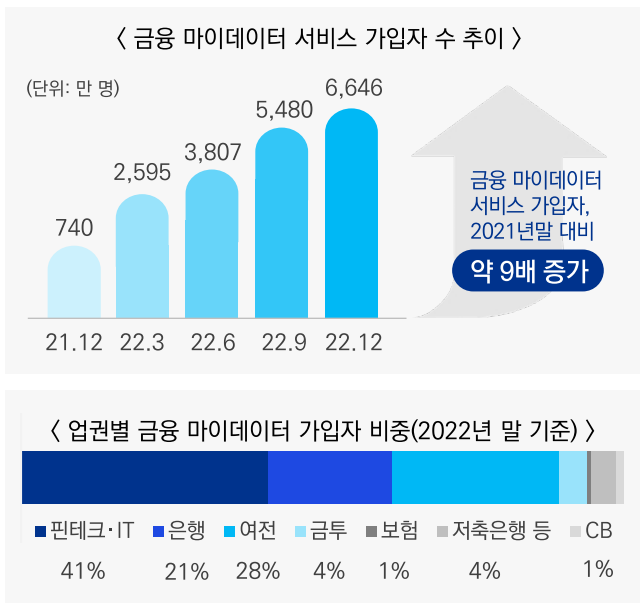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최근 전자금융업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로 ① 금융 마이데이터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빅테크의 개인 금융서비스 영역 확장, ②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출시, ③ 엔데믹을 환영하는 외환 관련 전자금융 서비스 등 3가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빅테크, 금융 마이데이터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개인 금융서비스 영역 확장

B2C 시장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업자들이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맞춤형 금융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통해 제공 중인 가운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2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 6,646만 명(중복 가입자 포함), API 일평균 전송건수 3.84억 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한 지속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 60개사에 이르며, 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핀테크, 통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동 사업에 진출하는 중이다.

한편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빅테크 및 핀테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핀테크·IT 기업의 금융 마이데이터 가입자 비중은 41%에 달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28%), 은행(21%)을 크게 앞서고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관련 매출 또한 2022년 2조 1,280억 원 중 대부분의 매출(99.7%)이 핀테크·IT 사업자의 전자금융 수익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및 업권별 비중]



Source: 금융감독원(2023.4.12), '2022년 금융데이터산업 영업실적 분석(잠정)'
Note: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가입자 기준, 앱 별 중복 가입자 포함

[금융 마이데이터 영위 기업 영업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핀테크·IT		금융회사 ⁴	합계
	상위 3사 ³			
영업수익	21,224	20,367	56	21,280
신용정보통합관리	46	-	-	46
겸영업무 등 ²	21,178	20,367	56	21,234
영업비용	22,635	20,253	1,342	23,977
인건비·마케팅	5,851	4,146	1,061	6,912
수수료	8,261	7,973	133	8,394
기타	8,523	8,134	148	8,671
영업이익(손실)	△1,411	114	△1,286	△2,697

Source: 금융감독원(2023.4.12), '2022년 금융데이터산업 영업실적 분석(잠정)'
Note 1: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가입자 기준, 앱 별 중복 가입자 포함
Note 2: 대출중개, 데이터분석, 광고홍보, 전자금융 등 본인신용정보 관련 겸영·부수업무
Note 3: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ote 4: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관계법률에서 허용된 고유업무 등 관련 영업수익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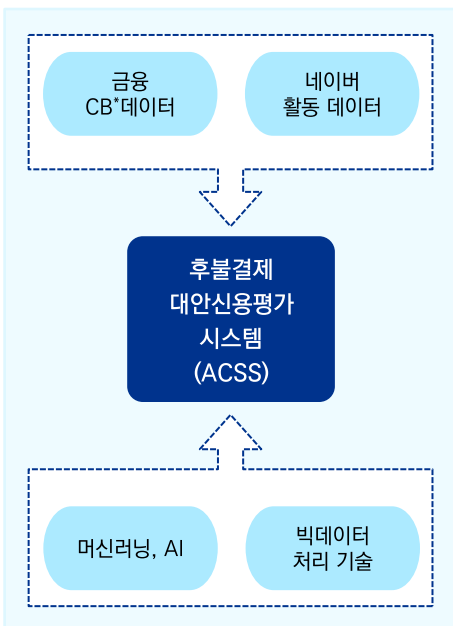
최근 주요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한 후불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경우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 받은 기업들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만의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기반으로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신평파일러(Thin-Filer, 금융 이력 부족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2021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당해 4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에서도 자체적인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하여 2022년 1월부터 월 최대 15만 원 한도의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운데, 토스 또한 사용자들의 금융정보와 결제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월 30만 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자금융업자들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신평파일러들의 소액 신용 기회가 증가할수록 데이터가 집적되고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고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신용평가 방법론]



Source: 네이버페이,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CB(Credit Bureau, 신용평가)

[후불결제 프로세스 및 국내 빅테크의 관련 서비스]



기업명	출시일	BNPL 서비스 관련 동향
네이버 파이낸셜	2021.4	• 사용자가 보유한 네이버페이 포인트 소진 후 결제금액 부족분에 대해 30만 원 한도로 후불결제 시범 서비스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시작
카카오페이	2022.1	•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월 15만 원 한도 버스·택시·하이패스 이용 시 사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출시
토스	2022.3	• 월 30만 원 내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 무신사, 에이블리, 크림, 위메프, 제주항공 등 제휴 가맹점에서 후불결제 이용 가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B2B, B2G 대상으로는
돌리며 기업·소상공인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출시하는
전자금융업자들 증가

”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출시

간편결제 및 송금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주요 고객군으로 삼으려는 B2B, B2G 대상 전자금융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6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이 중 소상공인은 684.3만 개에 달하여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물적 담보력 부족, 매출 영세성,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숙박·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융비용으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되기도 했다.⁵⁾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존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 등은 빅데이터, 자동화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정보 부족이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빅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대출시장 및 상품 다각화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일반 개인 대출과 비교 시 고객 수는 적으나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객 유치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개인사업자,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오프라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자 대출 서비스를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 제휴하여 선보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토스뱅크를 필두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모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서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사업자 대출시장의 확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핀다 등이 대출비교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빅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대출상품 출시 현황]

NAVER FINANCIAL

- 대상: 3개월 연속 스마트스토어 매출 50만 원 이상이고 반품률 20% 미만 개인사업자
- 특징: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소득에 반영하여 심사

toss bank

- 대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내역 발생, 연소득 5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특징: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출시

kakaobank

- 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 특징: 영업일, 매출액과 무관하게 대출 신청 가능

Kbank

- 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특징: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과 보증서담보대출 상품을 모두 제공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4) 중소벤처기업부(2022.7.28),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5) 국내 중소기업들은 '높은 대출금리'(85.7%)로 인한 애로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0.7%), '대출한도 부족'(12.7%) 등의 순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중앙회(2023.2.20), '중소기업 고금리 애로 실태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업에 뛰어든 물류 IT 전문기업 케이엘넷(KL-Net)은 2021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후 2022년 5월 수출입 물류 비용을 자동 수납 및 결제하는 ‘프리즘아라(PLISM Accounts Receivable Automation)’를 출시했다. 동 서비스를 통해 물류업체에 청구서 자동 발급,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결제, 자동 수납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물류 관련 정산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케이엘넷은 물류 IT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추가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확장했다.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서비스도 눈에 띈다. 직페이(ZIKPAY)는 건설,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용역 거래의 결제지연, 미수금 등 지급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프로젝트에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발주사의 용역거래 대금을 안심 계좌에 예치하고 예치 금액만큼 업체(공급자)에게 토큰으로 대체 지급, 약정기간이 끝난 토큰은 고객이 예치한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직페이의 용역거래 안심대체결제 시스템은 2019년 7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50여개 기업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해외진출도 협의하고 있다.

[B2B 등 기업 및 기관 대상 주요 전자금융 비즈니스]

<p>케이엘넷의 PLISM AR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IT 전문기업 케이엘넷(KLNet)은 2021년 12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등록하고 2022년 5월 수출입 물류 비용을 자동 수납·결제하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 ‘프리즘아라(PLISM ARA)’를 출시
<p>직페이의 안심결제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제 솔루션 제공 핀테크 기업 직페이(ZIKPAY)는 건설, 제조,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고객(발주자)의 용역 거래 대금을 안심 계좌에 예치하고, 예치한 금액만큼 업체(공급자)에 토큰으로 대체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
<p>커넥의 ePAYD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넥(KANAK)은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솔루션 ‘이페이데이(ePAYDAY)’를 자체 개발하여, 축적된 결제정보와 빅데이터를 의료데이터 분석 및 질병 예측에 활용해 병원 대상 통합정산과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Source: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
혁신 서비스 제공,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잠재적 이점도 상존

”

PG사로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커넥(KANAK)은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솔루션 ‘이페이데이(ePAYDAY)’를 개발하여, 결제정보와 빅데이터를 의료데이터 분석 및 질병 예측에 활용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통합정산,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넥은 결제 원천사와의 직연동 시스템으로 결제와 승인 프로세스를 구축한 가운데,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여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다.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로 확대 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 컨설팅 등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출시의 잠재적인 이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개인사업자 CB업 등의 허용에 이어 기업 재무정보 등에 대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했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 정보를 API로 개방하고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과 신산업분야혁신 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등 기업금융 인프라 개선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어, 기업금융 분야에서 개인사업자의 영업·경영활동 지원과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자금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던
 외환 전자금융 서비스
 업체들, 엔데믹 전환으로
 성장에 날개 기대
 ”

엔데믹을 환영하는 외환 관련 전자금융 서비스

2017년 7월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을 신설하면서 핀테크 기업이 해외송금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자본금 요건 완화와 송금 및 수금 한도 상향,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영업방식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자, 국내 출입국 인원이 급감하였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체들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Endemic) 수준으로 전환되면서 여행수요가 늘어나자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외환 관련 전자금융 서비스 업체들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 개요 및 주요 핀테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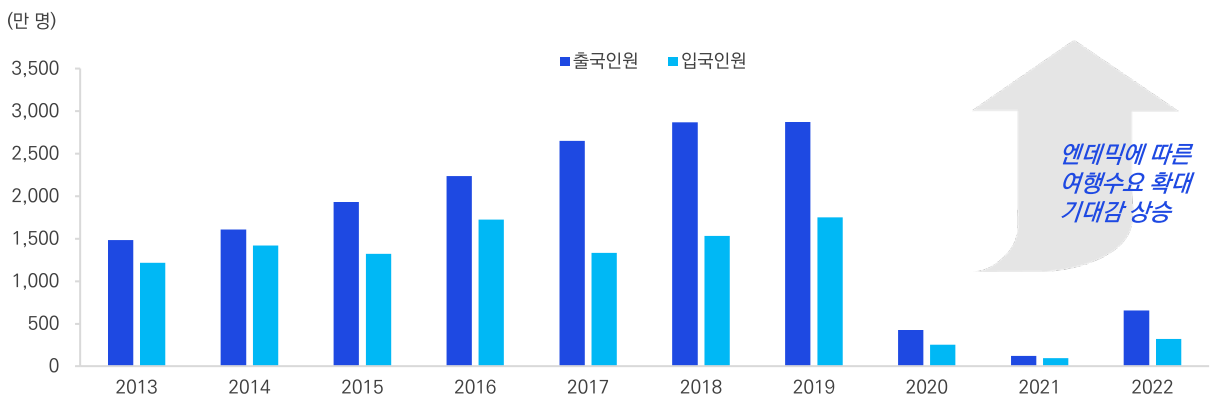
기업명	등록일	주요 서비스	전자금융업 등록사항
글로벌 머니익프레스	2017.8.23	• B2B 결제, 개인 송금, 디지털 지갑 등	• 선불전자지급수단(2020.8.18) • 전자지급결제대행업(2021.12.24)
지머니트랜스	2017.9.18	• 개인 송금, 외국인 전용 제휴 체크카드 등	• 선불전자지급수단(2021.1.28)
센트비	2017.12.1	• 외화 송금 및 결제, 외화 선불카드(준비중)	• 선불전자지급수단(2021.12.28) • 전자지급결제대행업(2019.12.30)
모인	2018.1.3	• 개인 및 법인 해외송금	• 전자지급결제대행업(2021.1.26)
트래블월렛	2018.12.27	• 외 화 선 불 카 드 , 해 외 온라인플랫폼 결제	• 선불전자지급수단(2020.1.3)

소액해외송금업이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인당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 자본금 요건: 10억 원
- 송금 한도: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
- 주요 의무: 이행보증금 예탁,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Source: 금융감독원(2019.5.31), ‘소액해외송금업 영업 현황’,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기업은 등록일 순
 Note 2: ‘모바일통’은 2020년 ‘트래블월렛’으로 사명변경

[2013~2022년 연간 해외여행객 추이]



Source: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소액해외송금업체 및
금융사, 전자금융업에 등록
및 파트너십 등으로
해외결제 특화 카드 및 혁신
외화 체크카드 발행, 내국세
환급 대행 프로세스 개선 등
포스트 엔데믹 준비



외환 정산 구조를 효율화한 트래블월렛은 2020년 1월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고 2021년 2월 ‘트래블페이(Travel Pay)’라는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트래블페이는 트래블월렛 앱을 통해 필요한 외화를 전용 카드에 미리 충전하고 수수료 없이 충전된 외화로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위기가 다가왔으나 해외결제 특화 카드와 해외 직구 결제 서비스로 리스크를 타개하면서 2023년 3월에는 197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디지털 환전’을 앞세우며 시작한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Travlog)’의 인기도 눈에 띈다. 트래블로그는 2022년 7월 출시한 체크카드로, 해외여행 시 환전, 해외결제, ATM 출금 등이 가능한 여행 특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체크카드 발급은 개인 금융거래 계좌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2019년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하나머니와 연결하여 하나머니를 충전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환전 및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2023년 6월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고 관련 신용카드 서비스도 추가 출시할 정도로 하나카드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아시아 최초의 세금환급 대행사업자인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내국세 환급 대행이 주요 사업부문인데, 2022년 7월 PG사업에 등록하며 간편 결제와 텍스리펀드를 통합한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며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외환 관련 주요 핀테크·금융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월렛(Travel Wallet) • 2017년 10월 설립 • 전자금융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 2020년 4월 전세계 두 번째, 아시아 최초로 비자(VISA)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카드 발급 및 외화 정산을 직접 수행 • 충전식 선불카드(트래블페이카드)에 미국, 유럽, 중국 등 38개 외화 충전, 해외 현지 결제 및 ATM 출금, 해외직구 결제 수수료 무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Travlog) • 2022년 7월 서비스 출시 • 포인트 계정과 카드를 연결되게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하나머니’와 연결 • 18종 통화로 충전·결제가 가능, 환전·결제·ATM 인출 수수료를 면제 • 마스터카드(Mastercard)와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 평가 받고 있으며, 목표환율 자동충전 기능 등 서비스 확대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텍스프리(Global Tax Free) • 2005년 12월 설립 •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 아시아 최초의 세금환급(Tax Refund) 대행사업자로,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세 환급 대행이 주요 사업 • 리오프닝 기대로 2022년 7월 PG사업에 등록하며 간편결제와 세금환급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 준비
--	---	--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전자금융업의 주요 이슈

다양한 비금융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고, 소비자의 전자금융업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전자금융업을 둘러싼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전자금융업에서 주목을 받은 주요 이슈로 (1) 전자금융업 경쟁도 심화, (2)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부담 논란,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향방, (4) 선불충전금 리스크 우려 증대, (5) 전산장애와 사이버 리스크 등의 부각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꼽아 분석해 보았다.

[전자금융업의 주요 이슈]



01 심화되는 전자금융업 경쟁도

비금융업자의 활발한 전자금융업 진출과 사업모델 고도화 등 높아지는 경쟁도 속 애플페이 상륙으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제기



02 사용 편의성으로 영역 확대한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논란

스마트폰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각광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간편결제 수수료를 적정성 관련 논쟁 등 지속



0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향방은?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비대면 환경 변화 등 반영 및 비금융사업자의 디지털금융 진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개정안 재논의 중



04 선불충전금 리스크 우려 증대 ... 내 충전금은 안전할까?

충성고객 확보, 할인·적립 혜택 등으로 선불충전금 인기 확대... 이용자 보호 우려 제기되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등 규제 강화 필요성 고조



05 전산장애와 사이버 리스크 등의 부각

전산센터 장애, 시스템 부하, 정보 유출 등 전자금융의 IT 리스크 부각,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시장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로 전자금융업 등록 증가 및 경쟁 심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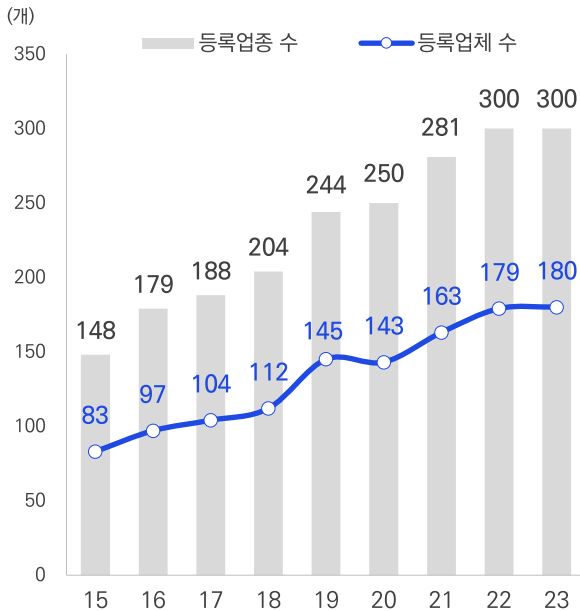
(1) 심화되는 전자금융업 경쟁도

늘어나는 전자금융업 등록과 자연스레 심화되는 경쟁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2015년 5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항목 간소화 등 등록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이후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기업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3월 15일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수는 180개로, 2015년 대비 117% 늘어났다. 다수의 기업이 중복 업종으로 전자금융업에 등록해서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 유형별로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47%),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26%)이 가장 많이 등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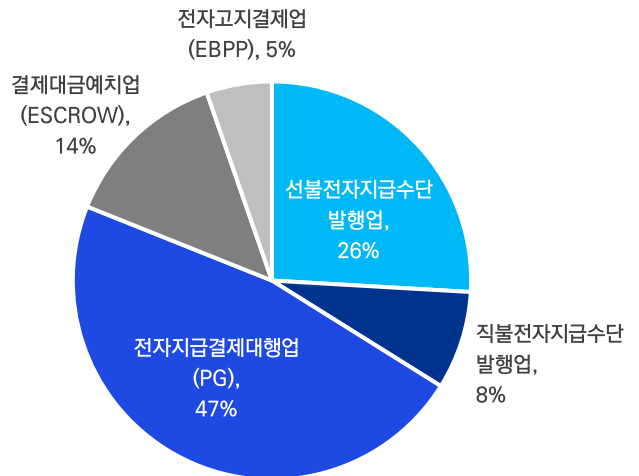
비금융기관의 경우 소비자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락인(Lock-in)하고 결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전자금융업으로의 진출 동기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기반,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반 등 다양한 지급수단에 대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중복업종에 등록한다.

[전자금융업 등록 추이]



Source: e-금융민원센터
Note: 각 년도 말 기준, 2023년은 3월 15일 기준

[전자금융업자 등록 유형 분포]



Source: e-금융민원센터
Note: 2023년 3월 15일 기준

“ 전자금융업에 중복 등록하여
다방면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전자금융업자들 ”

2020~2022년 동안에도 핀테크, 유통, 딜리버리 관련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전자금융업에 등록했으며, 기존 전자금융업 기업들이 다른 세부 업종을 추가하기도 했다. 동 기간 중 대표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모빌리티, 토스페이먼츠 등이 2개 이상 전자금융 서비스 업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5가지 전자금융업에 모두 등록한 카카오페이에 이어, 네이버파이낸셜 또한 2020년 추가적인 등록을 거쳐 5가지 전자금융업에 등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포인트 충전 및 적립, 간편결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재산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NPay)’가 가장 유명하며, 2022년 4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Total Payment Volume, TPV)은 13.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최근 간편송금 시장에서의 전자금융업자들의 영향력도 눈에 띈다. 한국은행의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2023.4.27)에 따르면, 2022년 동안 간편송금 이용규모는 일평균 6,6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는데, 이 중 빅테크·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거래금액이 일평균 6,109억 원으로 97.6%를 차지했다. 간편송금과 더불어 간편결제, 페이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의 결제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에서는 간편 전자지급서비스 시장을 빅테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주도한다고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들은 향후 시장 내 경쟁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2022년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주요 기업의 관련 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결제대금예치업(ESCROW) ■ 전자고지결제업(EBPP)



기업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고지 결제업	주요 서비스
네이버 파이낸셜	● (‘19.11.01)	● (‘20.10.08)	● (‘19.11.01)	● (‘19.11.01)	● (‘20.03.24)	- ‘네이버페이’ 통해 포인트 충전·적립, 간편 결제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등
카카오 모빌리티	● (‘20.06.03)		● (‘20.06.03)			- ‘카카오T 포인트’로 모빌리티 이용 시 포인트 적립, 선불충전하고 현금처럼 이용 가능
토스페이먼츠			● (‘20.08.03)	● (‘20.08.03)		- 국내 대형 이커머스 가맹점 대상 PG사업 영위 - ‘디스코드’ 커뮤니티 통해 실시간 PG 연동 컨설팅 서비스
당근페이	● (‘21.09.28)		● (‘21.09.28)			- 선불식 충전금 ‘당근머니’ 통해 중고거래 송금, 결제 가능
인터파크	● (‘22.04.01)		● (‘22.04.01)	● (‘22.04.01)		- 모바일 티켓 예매 시, 간편결제 서비스 ‘월페이’, 쇼핑·도서 서비스에 선불전자지급수단 ‘S-Money’ 이용 가능

Source: e-금융민원센터,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Note: 2022년 12월 27일 기준, 괄호 안은 등록일자

“

애플페이 국내 진출로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
경쟁 격화

”

애플페이 국내 상륙에 따라 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에도 주목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자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필두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3월 21일부터는 애플페이(Apple Pay)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서 34%를 점유하는 만큼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단말기 보급률이 낮은 국내에서 애플페이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⁶⁾ 그러나 애플페이와 독점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 국내 출시 후 한 달 동안 신규 발급된 카드는 약 35.5만 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했으며, 신규 등록 토큰 수(애플페이 사용 가능한 기기 수)도 3주 만에 200만 건을 초과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애플페이 한국 상륙으로 촉발된 ‘페이 전쟁’에 맞불을 놓는 기존 국내 사업자들의 전략도 다양하다. 2022년 12월 국내 카드사들은 연합 서비스인 ‘오픈페이’를 출시한 데 이어, 2023년 2월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결제와 월렛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상호 서비스간 결제 연동이 가능해 졌다. 카카오페이도 ‘내 주변 서비스’ 강화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내 전자금융 서비스 플레이어들의 경쟁은 한 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참고] 한국에 침투한 애플페이… 빠르게 커지는 영향력



삼성페이의 유료화 가능성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로부터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페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페이는 카드사에 라이선스 비용만 연 단위로 받고 결제 건당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계약을 맺은 카드사에 2023년 8월 10일부터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페이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향후 간편결제사 수수료 요구와 카드사 수익성 악화, 카드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예상되고 있다.



애플의 추가 금융 서비스 출시 가능성

애플은 미국에서 후불결제 서비스(Apple Pay Later), 카드(Apple Card), 저축계좌, 선불형 지급수단(Apple Cash)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아직 애플페이 외 여타 금융 서비스에 관한 해외진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애플페이의 국내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후불결제 서비스 등이 국내에 추가 도입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은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2023.5.9)’에서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 서비스는 선결해야 하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6) 국내 카드결제 단말기는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 또는 집적회로 스마트카드(Integrated Circuit, IC)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2) 사용 편의성으로 영역 확대한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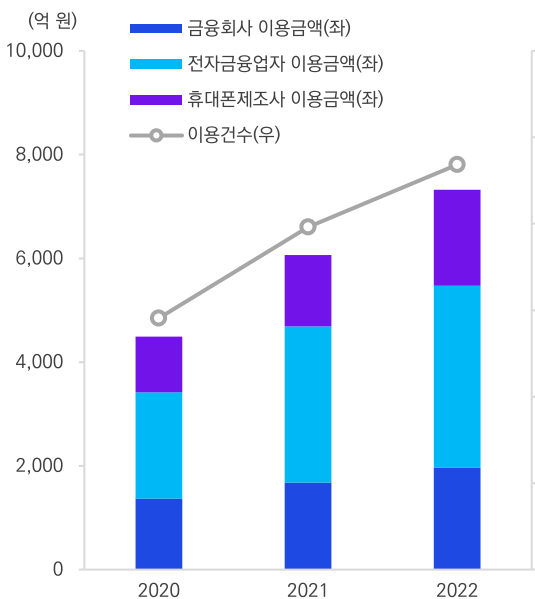
편의성 확보한 간편결제의 무서운 성장

“
결제 편의성 확보한
간편결제, 국내 소비자들은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이용이 가장 빈번
”

현금 없는(Cashless)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2015년 3월)된 이후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 정보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로, 특히 카드 정보 입력, 본인 인증 등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이처럼 결제 편의성을 확보한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2년 중 일평균 2,342만 건, 7,326억 원 거래가 이루어지며 전년 대비 각각 18.2%, 20.8% 증가하며 이용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기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실적 비중(일평균 이용금액 기준)은 전자금융업자(47.9%), 금융회사(26.8%), 휴대폰제조사(25.3%) 순으로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이 간편결제 이용 시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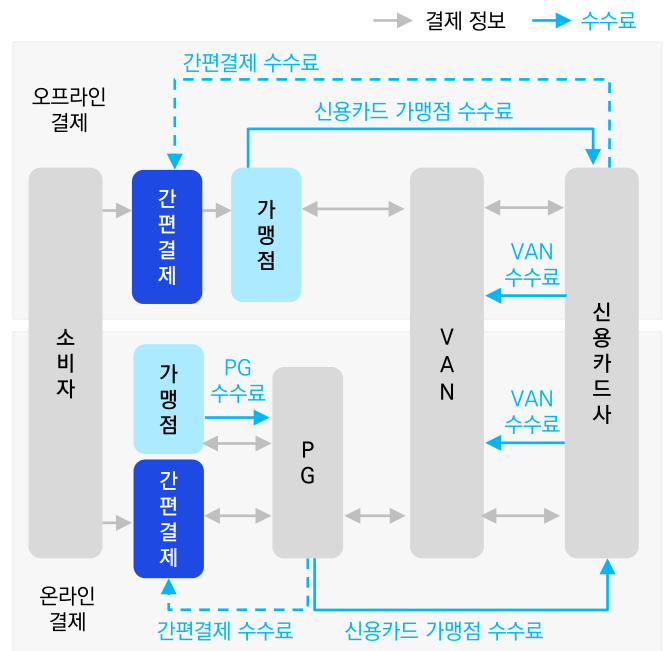
간편결제 서비스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 간편결제 사업자가 개입하는 구조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간단히 보면 이전 결제 구조가 ‘가맹점→PG사→신용카드사’였다면 간편결제사가 등록하면서 ‘가맹점→간편결제사(1차 PG)→PG사(2차 PG)→신용카드사’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편결제사는 정산을 진행하며 신용카드사(오프라인)와 PG사(온라인)로부터 간편결제 수수료를 수취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Source: 한국은행(2023.03.24), '2022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Note: 1) 일평균 기준, 2) 신용카드에는 체크카드 포함

[신용카드 간편결제 구조]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2018.12),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심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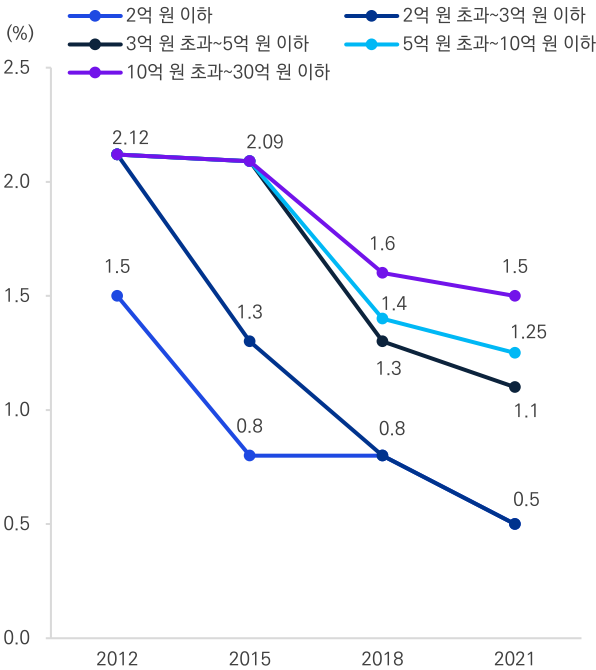
“ 필수불가결한 간편결제 채택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 논란 ”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논란과 수수료 공시

카드를 통한 결제나 카드 또는 선불충전금 기반 결제 등의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영세·중소 가맹점에 부과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발생되기도 했다. 카드사의 경우 적격비용 산정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 및 조정 의무 등이 존재하나 전자금융업자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2022년 5월부터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간편결제 사업자의 공시 양식, 수수료 구분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2022년 12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 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사가 가맹점으로 받는 수수료에 결제 수수료 외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되지만, 항목별로 구분 관리하지 않고 가맹점과 통합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해 적정 수수료율을 가능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현황]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종합
Note: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이며, 범례는 가맹점 연 매출구간으로 구분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항목]



Source: 금융감독원(2022.05.19),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7) 카드사의 경우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1년 12월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0.5%~1.5% 범위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2023년 3월 31일부터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최초
공시 시작...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카드사 수수료와 PG,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카드사 수수료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가 구분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관련 분석 이후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천억 원 이상 기업에 결제 수수료율 공시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2023년 3월 31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최초 공시대상 업체 중 9개 기업이 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한 가운데, 동 기업들의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2.39%,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2.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들 중 간편결제 수수료가 가장 높은 기업은 '우아한형제들'로, 카드 결제 수수료율 최고 3.00%, 선불 결제 수수료율 3.00%를 기록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공시되기 전 이른바 빅3으로 불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가 2023년 1월 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으나, 전자금융업자들 대부분이 카드사 수수료율(0.5~1.5%)을 상회하는 수준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에 전자금융업자들은 결제 시스템 구축, 가맹점 부실 위험 관리, 운영·보수 비용 등이 수수료율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

〈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수수료 구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기준에 따라 ①결제수수료, ②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구분하여 수취·관리 ① 결제수수료: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 포함 ② 기타수수료: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 포함
결제수수료율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매반기 '결제수수료율' 공시 (최초 공시자료는 적정성 및 정확성 담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할 예정

〈 최초 공시대상 업체 〉

기준: 2021년 중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천억 원 이상 10개사

순번	회사명	서비스명
1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2	쿠팡페이	쿠팡페이
3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4	G마켓	스마일페이
5	11번가	에스케이페이
6	우아한형제들	배민페이
7	NHN페이코	페이코
8	SSG닷컴	에스에스지페이
9	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
10	롯데멤버스	엘페이

Source: 금융감독원(2022.12.29),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거래규모 순이며, 롯데멤버스는 2023년 3월말 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일부 종료함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됨

“

당분간 간편결제 우대
수수료를 의무 적용에 대한
논쟁 지속 전망

”

그러나 2023년 2월 14일 신용카드사에 부과된 의무 조항처럼 각종페이 또는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영세·중소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간편결제 수수료율 관련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 온라인 상거래 및 플랫폼 사업자들로, 공시 이후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구분할 수 있어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단위: %)

기업명	구분	영세	중소1	중소2	중소3	일반
네이버페이낸셜	카드	0.84	1.35	1.51	1.77	2.18
	선불	0.91	1.39	1.56	1.82	2.17
쿠팡페이	카드	1.03	1.64	1.79	2.06	2.50
	선불	2.50				
카카오페이	카드	1.21	1.01	1.12	1.36	1.40
	선불	1.84	2.08	2.06	1.98	1.66
G마켓	카드	1.08	1.68	1.89	2.10	2.59
	선불	2.49				
11번가	카드	1.30	1.90	2.05	2.30	2.90
	선불	2.00				
우아한형제들	카드	1.52	2.11	2.26	2.51	3.00
	선불	3.00				
NHN페이코	카드	0.87	1.45	1.51	1.95	2.28
	선불	1.71	2.11	2.13	2.25	2.23
SSG닷컴	카드	0.95	1.56	1.71	1.96	2.59
	선불	2.50				
비바리퍼블리카	카드	0.97	1.62	1.48	1.99	2.09
	선불	1.01	1.39	2.05	2.44	1.55

Source: 금융감독원(2023.3.31),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를 통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카드'는 카드 결제수수료율, '선불'은 선불전자지급구단 결제수수료율을 뜻함

Note 2: 가맹점 연 매출구간 분류는 다음과 같음. 영세) 3억 원 이하, 중소1)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중소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중소3)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일반) 30억 원 초과

Note 3: 부가가치세율 별도

Note 4: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거래규모 순이며, 롯데멤버스는 2023년 3월말 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일부 종료함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됨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향방은?

디지털금융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 역할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은 2006년 제정 후 큰 틀이 유지되어, 비대면 환경 변화로 인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의 저변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2020년 7월 금융위원회는 빅테크·핀테크 등 기술 기업과 카드사 등에 지급서비스를 개방하여 금융 혁신과 소비자 편의 제고를 도모하는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전금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등 개정안은 ① 7개로 나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되, ② 지급계좌(Payment Account)를 기반으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⁸⁾과 ③ 이용자의 결제·송금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⁹⁾을 신설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개편했다. 또한 ④ 후불결제업무 허용, ⑤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 ⑥ 빅테크 등에 대한 거래청산업 제도화, ⑦ 이용자 예탁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전금법 개정안은 비금융회사와 은행 등의 경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이용자 자금 피해 가능성,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 관련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며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 2020년 하반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일환으로 발표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중 전자금융업법 개편안(2020년 7월)]

〈 전자금융업종 현행 〉		〈 전자금융업종 개편(안) 〉		〈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안) 주요 내용 〉
전자금융업종	최소자본금	전자금융업종	최소자본금	
전자자금이체업	30억 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200억 원	①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 기능별 개편: 기존 7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재편, 종합지급결제업과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②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 금융위원회 지정제 ③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④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⑤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마련 ⑥ 빅테크 등에 대한 거래청산업 제도화 - 청산기관을 이용한 내부거래 외부청산 ⑦ 이용자 예탁금 보호
전자화폐업	50억 원			
선불전자지급수단업	20억 원	대금결제업	10억 원	
직불전자지급수단업	20억 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10억 원	결제대행업	5억 원	
결제대금예치업	10억 원			
전자고지결제업	5억 원	지급지시전달업	3억 원	

Source: 금융위원회(2020.7.2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8) 종합지급결제업: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개념으로,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 영위, 이용자의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예대 업무 불가),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대금결제·자금이체 한도 상향 등으로 플랫폼 이용자의 다양한 금융 거래 수요에 대응 가능
 9) 지급지시전달업: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

“
 최근 들어 은행산업 경쟁도
 제고 방안으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
 논의되며 쟁점 부상
 ”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한편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과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및 혁신 지속 차원에서 최근 전금법 개정안이 재논의되고 있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규제 강화와 소액후불결제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5월 11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추후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①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 예치·신탁해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 범위가 확대되고, 가맹점 축소 등의 경우 고객 고지 의무 등 선불업자는 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②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되어 간편결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정책당국은 은행산업 경쟁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23년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를 개최하고 동년 3월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 동향]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FDS는 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의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회의에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제도화 논의, 도입 시 장단점 존재함에 따라 관련 논의 지속 예상



이에 현재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2023.3.2)와 2차 회의(2023.3.30)를 통해 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 방안으로 카드사 등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및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방안과 이와 관련된 소비자 편익 및 리스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Payment Account)를 발급·관리할 수 있어 예대업무를 제외하고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비금융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카드사·보험사나 빅테크 등이 각 금융업의 강점과 시너지를 창출해 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납입 등 은행 수준의 계좌 관리와 금융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또한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출현과 스케일업을 지원해 금융산업 내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논의 주요 내용]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전자금융법 개정안 내용]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	
주요 내용	• 전금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화
필요성 (장점)	• 경쟁촉진: 은행의 유효 경쟁을 촉진, 핀테크 스케일업과 카드사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 제공 가능 • 소비자 후생 증가: 은행 계좌가 없어도 보편적이고 편리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자 등 포용
문제점 (단점)	• 예금보험제도 미적용, 결제 리스크,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 등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문제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주요 내용	• 보험회사 경영업무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보험법 시행령 §16 개정) • 보험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카드사 과제와 동일)
필요성 (장점)	• 보험료 인하, 원스탑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가
문제점 (단점)	• 비중 확대에 따른 결제 리스크 증가와 같은 건전성 문제나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관련 문제 발생 가능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주요 내용	•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이사회 의결사항)을 통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 증권사의 결제리스크 예방을 위해 (은행권 수준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강화방안과 연계
필요성 (장점)	•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금융비용 감소, 금융회사 간 업무 형평성 제고, 기업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 강화
문제점 (단점)	• 은행 대비 높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등으로 결제리스크 확대, 증권사의 은행화로 인한 금산분리 정책 실효성 저하

Source: 금융위원회(2023.3.3), ‘[보도참고]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중 ‘(별첨) 제1차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 관련 주요 내용임

구분	내용
진입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 2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및 기타 인적·물적 요건 • 금융위원회가 지정
실명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적용	•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실명법 §3(실명거래), 특정금융정보법 §2.4호(자금세탁방지) 등 준수 필요
경영·부수업무 엄격 금지 및 제한적 허용	• 원칙상 전업주의 • 일반 전금업자의 다양한 경영·부수업무 중 외국환업무, 소액후불, 금융 마이데이터(MyData) 등 제한적 허용
건전성 감독 강화	• 타 전금업자 대비 건전성관리 기준(재무상태, 지급능력, 위험관리 등) 강화 가능
고객예탁금 전액(100%) 보호 의무화	• 고객자금(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외부 신탁·예치 의무화 • 예탁금의 상계·압류 금지 • 전금업자 도산 시 이용자 본인 자기에 대해 우선변제권 부여
예금·대출업무 등 금지	•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 대출채권 운용 및 그 밖의 신용공여 행위 등 금지
신용공여행위 제한	• 종지사가 수행가능한 소액 후불결제의 경우 재화·용역의 대가로서 소액결제만 가능
전금업자 행위규칙	• 합리적 이유 없는 이용자 차별, 설명거부, 오인유발행위 등 금지 • 주요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수준 안전성 확보의무 부과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 신규계약 체결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가능
전자금융사고 시 이용자 보호	• 합리적 권한 있는 자의 지시 없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일반에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 근거 마련

Source: 금융위원회(2023.3.30), ‘[보도참고]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중 ‘(별첨)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전금법 개정안 내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음영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규제

반면, 결제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은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 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서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Digital Run)¹⁰⁾ 발생 위험 증대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권의 동일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는 등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 도입에 비교적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이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 도입과 같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상충되는 지점에 놓여 있어, 금융산업 관계자들의 우려와 기대가 혼재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동 안건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 안정 수준을 전제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관련 논의를 신중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경쟁·소비자 편익·안정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



Source: 금융위원회(2023.3.30),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10) 디지털 런(Digital Run)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뱅크 런(Bank Run)’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빠르고 조용하게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뜻함. 디지털 뱅크런, 스마트폰 뱅크런 등으로도 불림



[참고] 규제 강화 움직임을 촉발한 ‘머지포인트 사태’

- ✓ (사건 경위) 머지포인트는 머지홀딩스와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할인쿠폰)을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구입하고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머지플러스가 상품권발행업으로 등록하여 영위한 사업이다. 20%의 높은 할인율(예를 들어 4만 원 결제 시 5만 원어치의 머지포인트가 머지머니로 전환)을 앞세워 큰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는 2021년 8월 11일 서비스 업종을 음식점으로 축소, 머지머니 판매 중단 및 머지플러스 서비스 임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게재하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와 이의 제기가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 ✓ (금융당국 등의 판단)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한국소비자원 또한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 (시장 영향) 모바일 상품권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관련 대규모 환불 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자금융업에 연이어 등록하면서 2021년 전자금융업자 등록 기업 수가 전년(143개사)대비 20개사 늘어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에 대한 재무 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현행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이거나 가맹점이 일정 수 이하일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전자금융업자들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개요

- 운영사: 머지플러스(주)
- 서비스 내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을 무제한으로 제공
- 선불충전 포인트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자 수 100만 여명, 매월 300~400억 원 규모의 거래 발생



머지포인트 사태 전개

- 2020 ○ 머지포인트 판매 개시
- 2021 ○ 8월 포인트 판매 중단, 사용자 대거 축소로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일명 머지런) 발생
9월 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이용자들 머지플러스 상대 집단 손해배상소송 청구
- 2022 ○ 1월 머지플러스 대표 및 공동설립자 구속 기소
7월 한국소비자원,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연대 책임 및 소비자 5,467명에게 약 22억 원 손해배상 결정
9월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6개 관련 사업자 조정 결정 수용 거부로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11월 법원, 1심에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 4년·8년 및 약 60억 원 추징명령,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선고
- 2023 ○ 1월 14개월만에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재개했으나 기존에 보유하던 고객 예치금(머지포인트) 환불 불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논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4) 선불충전금 리스크 우려 증대... 내 충전금은 안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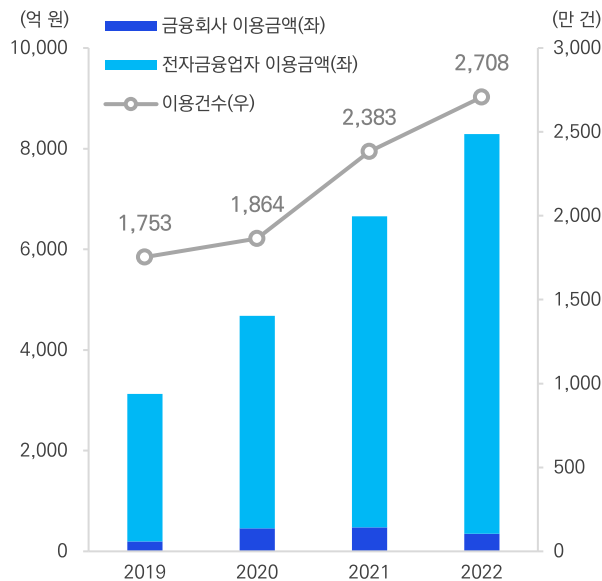
충성 고객을 잡아라, 경쟁적인 선불충전금 확보

‘○원 충전 후 결제 시 ○% 할인’, ‘○원 충전 시 적립금 ○원 추가’ 등 최근 페이 머니 충전 시 적립금을 주거나 할인을 해주는 등 선불충전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2022년 중 일평균 8,289억 원, 2,708만 건 이용되며 빠른 속도로 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충전금, 계좌이체 등 간편결제 지급수단 중에서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의 인기 요인은 선불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다른 지급수단 대비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먼저 선불업자 입장에서는 충전 후 이용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서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특정 선불업자의 서비스에 이미 선불충전금 잔액이 있는 이용자는 다른 선불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존 선불충전금 이용이 보다 편리하여 기존 서비스를 지속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써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반면, 선불충전금 결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업자가 모두 수취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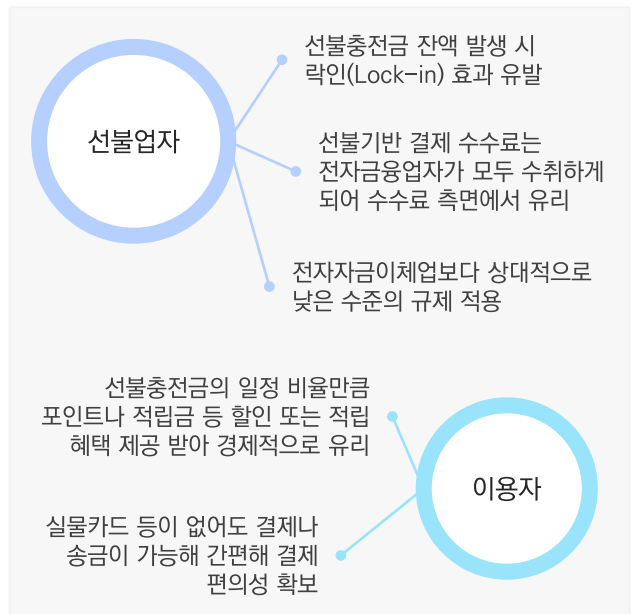
“ 선불업자, 이용자 모두에게 이점 발생으로 선불충전금 서비스 빠르게 확대 ”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



Source: 한국은행(2023.03.24), ‘2022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은행(2022.03.23), ‘2021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Note: 1) 일평균 기준, 2) 금융회사는 은행 및 카드사가 발행하는 각종 기프트카드, 전자지급의 선불계정 이체 실적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제공·이용 증가 주요 요인]



Source: 한국은행(2022.06),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2021년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은
2조 9,935억 원에 달해…
”

수수료 측면에서도 선불업자에게 장점이 존재한다. 끝으로 선불충전금 환급 방식을 통한 간편송금이 전자자금이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5년 1월)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업 대비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 받는 점도 선불업자로서 유리한 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선 불충전금을 통한 포인트나 적립금 등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실물카드가 없어도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이용할 용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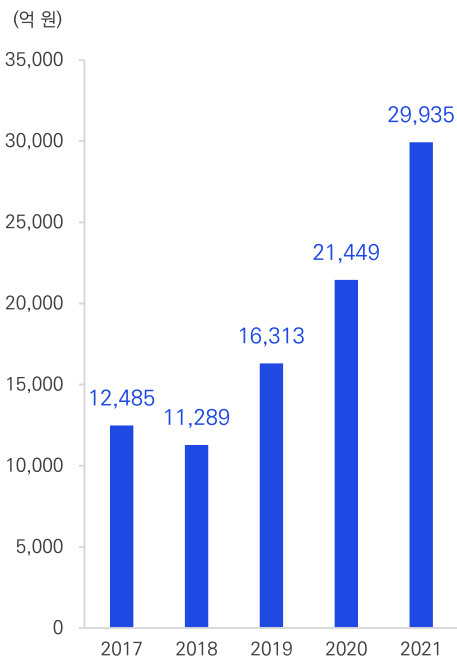
소비자 보호·지급여력 등 리스크 우려…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총 72개 선불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은 2조 9,93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 공격적으로 선불충전금 관련 영업을 진행하는 비금융 기업들의 선불충전금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위 10개사 선불충전금이 2조 4,246억 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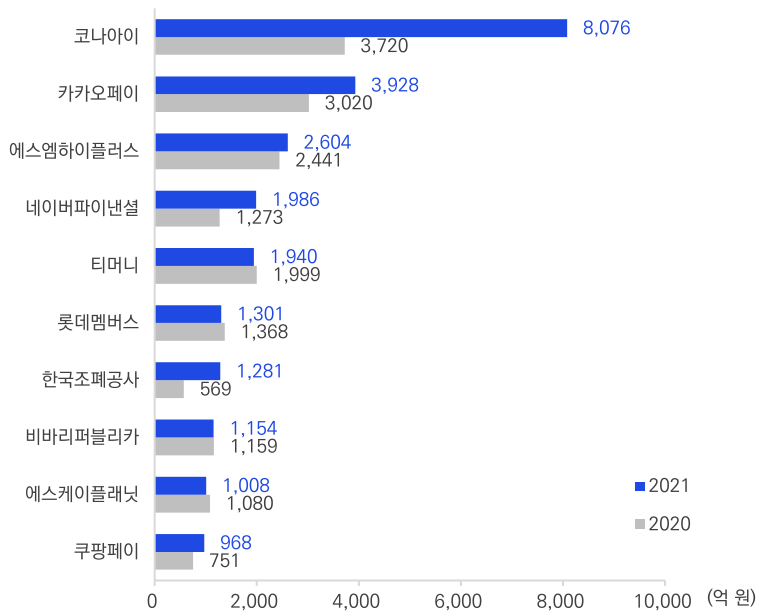
그러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

[전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전자금융업자 및 상위 10개사 선불충전금 현황]

〈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전자금융업자 선불충전금 추이 〉



〈 상위 10개사 선불충전금 현황 〉



Source: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Note: 코나아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미상환잔액 포함

“
 이용자보호 우려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는 중
 ”

자금의 100%,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에게 이용자 자금의 50%를 외부에 신탁하도록(특정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존재하며, 선술한 바와 같이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선불금융업의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자금 보호를 모색하는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023년 5월 1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제2117880호)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 폐지 및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면제 기준으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 축소, ③ 이용자에탁금의 전액을 고유재산과 분리 및 금융회사에 신탁, 신탁한 이용자에탁금 상계·압류 금지, ④ 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 가맹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축소 시 잔액환불과 통지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간편결제·송금 이용이 확대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입법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및 내용]

<p>추진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 확대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으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p>가이드라인 주요 내용</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9 1259 596 1404"> <p>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p> </td> <td data-bbox="596 1259 1366 1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불충전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td> </tr> <tr> <td data-bbox="329 1404 596 1539"> <p>신탁가입 한도</p> </td> <td data-bbox="596 1404 1366 1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함 </td> </tr> <tr> <td data-bbox="329 1539 596 1742"> <p>투자가능 자산</p> </td> <td data-bbox="596 1539 1366 1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 -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기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함 </td> </tr> <tr> <td data-bbox="329 1742 596 1879"> <p>관리·공시</p> </td> <td data-bbox="596 1742 1366 1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분기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모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td> </tr> </table>	<p>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불충전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p>신탁가입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함 	<p>투자가능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 -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기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함 	<p>관리·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분기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모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p>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불충전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p>신탁가입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함 								
<p>투자가능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 -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기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함 								
<p>관리·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분기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모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Source: 금융감독원(2020.9.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전산센터 장애 등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전자금융의 취약성도
드러나...
”

(5) 전산장애와 사이버 리스크 등의 부각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전자금융 관련 사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 관련 사고에 대한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특정 카드사의 전산센터 장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가 3시간 이상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특정 빅테크 기업의 전산센터 장애로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메신저,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간편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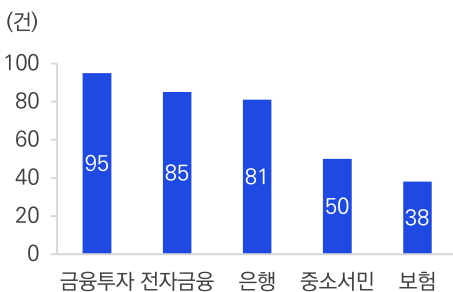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중 전자금융사고¹¹⁾ 발생 건수는 356건으로 전년대비 28건 증가했다. 특히 전자금융 장애사고의 경우 전년대비 37건 증가하고, 시스템 부하, 전산 설비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이 금융투자, 전자금융 등 업권 전반에 발생하여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추이 〉



〈 금융권역별 전자금융 장애사고 발생 건수 〉



〈 금융권역별 전자금융사고 발생 유형 〉

- 금투 권역**
 - 공모주 청약·상장 등으로 트레이딩 서비스(MTS 등)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으로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발생하여 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음
- 전자 금융**
 -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음
- 은행 권역**
 - 간편결제, 오픈 API 등 신규서비스 출시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및 소스코드 제3자 검증 등을 소홀히 하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장애가 다수 발생
- 보험 권역**
 - 프로그램 오류 및 전산 설비 장애가 많았으며, 특정 보험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전산자원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애도 있었음
- 기타 권역**
 - IT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착오로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설정값 또는 보안정책 오류 적용 등의 인적요인에 의한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

Source: 금융감독원(2022.4.25), '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11) 전자금융사고는 ① 침해사고(DDoS 공격,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홈페이지 위·변조, 악성코드 감염 등), ② 장애사고(10분 이상 시스템이 지연·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조작 등에 의한 금융사고) 등으로 나뉜다

전자금융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여지는 여전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변화의 속도는 아직 느린 편이다.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 원, 지방은행 10억 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 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57개 회사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산업에서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구축·운영 중이나,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탐지 시나리오 개선과 신규 시나리오 개발, 지능화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FDS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보안규율체계 정비 TF를 구성해 일정규모 이상 전금융자 등의 재해복구 설치의무 신설,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 상향 등 감독규정과 법률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독 당국의 노력을 통해 그간 효율성이 우선시되던 전자금융시장에도 성장에 걸맞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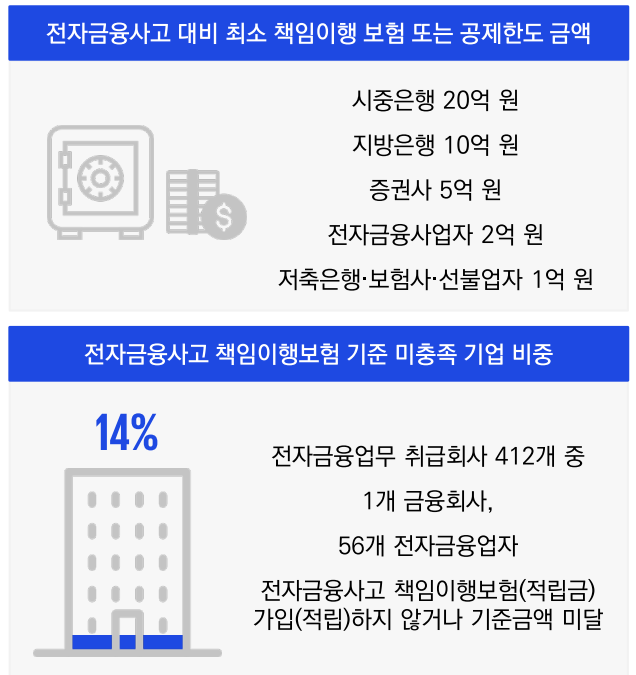
“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 보험 기준 강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고도화 등이 필요한 시점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예시]



Source: 금융감독원(2022.12.21),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관련 현황]



Source: 언론보도 종합,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

결론 및 시사점



디지털금융 선호, 기술 발전 등이 복합 작용하며 전자지급결제 거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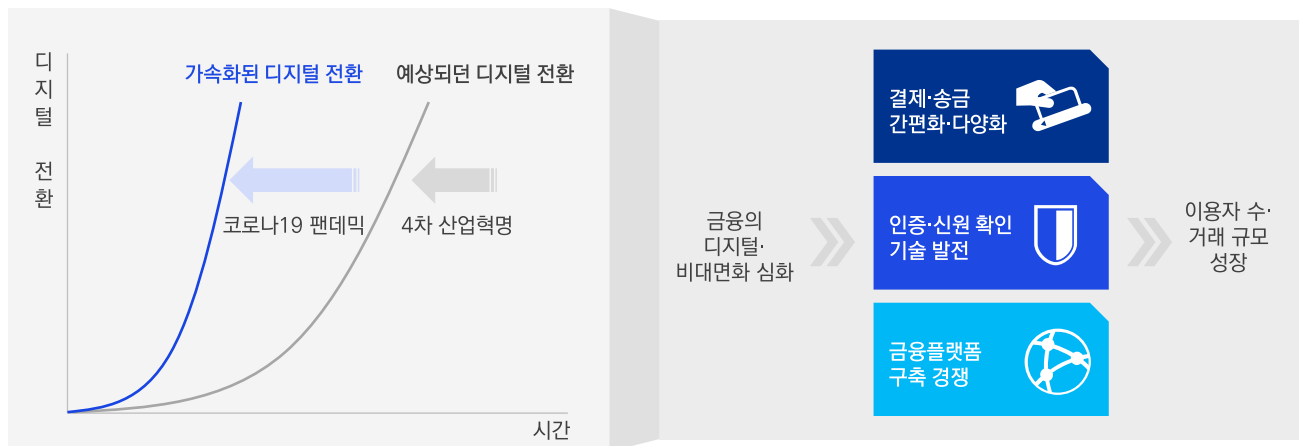
디지털금융 일상화와 전자금융업 환경 변화

이커머스의 성장과 비접촉 결제 선호 현상 등으로 현금 대신 카드나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결제가 일반적이다. 스마트폰, IT기술과 같은 하드웨어의 발전과 대중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솔루션) 또한 급격히 진화하면서 기업들은 전자지급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여 관련 서비스를 출시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도 심화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 또한 전 연령대에서 확대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전자지급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이용자들의 디지털금융 선호와 같은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도모하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되어왔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결제·송금 서비스 간편화, 인증·신원 확인 기술 발전, 금융플랫폼 구축·확장 경쟁 등으로 전자지급결제 거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비대면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카드 이용 비중이 2019년 3.8%에서 2021년 9.0%로 확대되며 디지털 방식의 지급수단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점점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선호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점점 채널은 플랫폼화가 이루어지는 등 디지털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금융의 최전선에 있는 전자금융업은 결제 방식 다양화 및 기술 발전, 신규 경쟁자 출현, 국내외 규제 마련 등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변화 속 전자금융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의 역량과 바람직한 금융인프라 및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금융의 발전]



Source: 금융위원회(2020.7.2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전자금융 서비스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기술과 사용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 ”

적응과 변화가 필요한 전자금융업 내 이해관계자들




플랫폼 경제 활성화,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 일상화 등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의 확산은 피할 수 없으며, 디지털금융이 더욱 익숙한 세대가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됨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출시될 수 밖에 없다. 기술도, 사용자도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응과 진화는 한 걸음 더 빨라져야 한다.

격전지가 된 전자금융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금융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자금융업계는 그야말로 전쟁터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 이들에게 구매부터 결제까지 끊김 없는(Seamless)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고객 락인(Lock-in)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기업, 빅테크, 핀테크를 비롯하여 유통, 배달 분야 기업들도 전자금융업 경쟁에 가세하면서 2023년 3월 기준 180개사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¹²⁾’이

[적응과 진화가 필요한 전자금융업 이해관계자들]

플랫폼 경제 활성화, 언택트 소비문화 일상화 등 기술과 사용자의 빠른 변화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확산은 필연적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

		
<h4>금융사</h4>	<h4>비금융사</h4>	<h4>정책당국</h4>
<p>국내외 경쟁자 진입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 속 고객경험 고도화와 파트너십 전략 수정 및 차별적 서비스 마련, 전자금융사고 등 관리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함</p>	<p>개인에게 최적화된 디지털금융 서비스 등 편의성, 혁신성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이용자 자금보호, 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절차 강화 등 필요</p>	<p>안정적인 시장 조성자로서 복잡다기화 될 전자금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감독 체계와 인프라를 준비해야 함</p>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1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 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

“

비은행·비금융업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기존
금융권에게 위기가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소액후불결제업 경영업무
허용,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진출 등 국내 전자금융업의
경쟁 심화...
금융서비스 고도화,
파트너십 전략 고민, 안정성
확보에 힘써야

”

도입되어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데이터 결합이 빅블러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금융 서비스의 대중화와 디지털 공간을 선점하려는 다양한 기업의 침투가 이어지면서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① 금융권, 치열한 경쟁 속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

비은행·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은행의 대행 결제금액 증가, 디지털 런 발생 위험 등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와 금융안정 및 소비자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권은 수익성이 낮아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은행·비금융업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업권간 경계를 허무는 촉매로 작용해 기존 금융권에게는 위기가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종합지급결제업 등은 은행에만 허용했던 계좌개설 권한을 보험·증권·카드·핀테크사 등 비은행권에도 열어주어 은행-비은행-비금융기업 간 예대업무를 제외하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 입출금, 급여 이체,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독자 계좌 개설을 통해 수수료 절감 및 비금융 사업자와의 제휴가 용이하여 생활금융플랫폼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좌를 통한 자산관리, 카드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맞춤형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증권사에 법인 결제가 허용될 경우, IB 등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 중심으로 법인 데이터를 축적·이용하며 자금 조달과 같은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 등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제공되는 후불결제 서비스(BNPL)의 경우, 향후 소액후불결제업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소액후불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선불업자의 자격 요건 등이 정해질 예정이나, 신평일러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BNPL 서비스를 확장·고도화하며 카드업계의 신용공여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애플페이와 같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공략한 서비스로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시도가 본격화되는 양상 또한 국내 지급결제사업자와 카드사의 입지를 좁힐 우려도 있다.

이처럼 지급결제 업무 확장을 통해 촉발되는 경쟁 상황에서 기존 금융권은 시장 지배력을 빼앗길 수 있는 만큼, 자사의 강점과 노하우 등을 녹인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경험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체 플랫폼을 통한 고객 접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객이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머물 수 있는 방안과 파트너십과 같은 협력 전략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금융 서비스

“

비금융권, 고객 최적화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과
실질적 편의성 및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

”

“

편의성, 혁신성과 함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이 중요한 시점

”

종류와 이용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권의 IT 보안 강화, 은행 및 카드사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버 공격이나 외부 서비스 위탁, 전산설비 장애 등과 관련한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FDS 시나리오 고도화, 전담 인력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금융사고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수적이다.

② 비금융권, 치열한 경쟁 속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중요

다양한 전자금융업자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결제 또는 송금 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확대되며 편의가 증가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는 고객 편의 제공이라는 일차적 목적 외 이용자 데이터 확보, 수수료 절감, 고객 선점 및 락인 효과 등을 기대하며 비금융 사업자들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결제 편의성을 제고해왔으나, 서비스 간 차별화 없는 비즈니스 모델, 과도한 마케팅 비용, 빅테크의 시장 독점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 브랜드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단순 결제·송금 지원을 넘어 통신·금융·유통 분야 등 다양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통해 고객에 최적화된 디지털금융·생활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서 고객 접점을 다수 확보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형 전자금융업자 또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의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절실하다. 전자금융업자들 또한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자사만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선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이용자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소하고 단순 수수료 수익 외 실질적인 편의성과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미 포화 수준에 다다른 B2C 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B2B 또는 B2G와 같이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타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계 서비스 마련 등을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자금융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돈’과 ‘정보’가 이동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편의성, 혁신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울타리 마련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2021년 8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운영사의 일방적인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자 대거 축소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이용자 자금을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바 있다. 이 외에도 전산장애 사고로 금융소비자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보기술(IT) 운영 실태 검사 범위를 모든 전자금융업자로 확대하여 IT 인프라 관련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 향후 전자금융업의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IT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IT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보호, 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절차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정책당국, 변화의 중심에서 안정적인 시장 조성자의 역할 중요

“

금융산업 혁신성, 편의성 증대됐으나, 기술, 서비스 변화 속도와 다양한 플레이어 참여 등 고려하여 적절한 감독체계와 인프라 마련 필요

”

그동안 정책당국 중심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및 데이터 3법 등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등 금융-IT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국내 디지털금융의 수준이 향상되며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 핀테크 발전 및 소비자 금융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지급결제가 중심이 되는 전자금융업에 비금융회사의 진입이 활성화되며 전자금융업은 소비자와 디지털금융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역할하며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고도화, 혁신성과 편리성을 지닌 핀테크·빅테크 금융서비스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금융산업 내 빅테크의 영향력 증대, 빅블러 등에 따른 금융거래의 복잡다기화, BNPL 등의 대출 부실 가능성,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디지털 런 발생 가능성 및 결제 리스크 등 다양한 우려가 수반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와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자금융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디지털금융의 발전 등 균형 있는 시장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금융안정성과 파급효과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사가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첫째, 최근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은행 산업의 경쟁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도입 여부가 거론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스몰라이센스 등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도입·개정 시 영향력이 큰 복합적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은 ① 2007년 시행 이후 큰 개정없이 지속되어 온 점, ② 전자지급서비스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금융 안정성과 금융 소비자보호 제고, 리스크 방지가 필요한 점 등에 따라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방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감독 체계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금융회사·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으로 발생 가능한 결제 리스크와 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엄격한 리스크 관리 방안, ‘동일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참여 기관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등이 균형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스톱(One-stop) 종합 금융서비스를 표방하는 현재 디지털금융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사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금융업 내 다양한 플레이어 간 공정경쟁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해 정보 공유 범위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의 성장을 촉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오픈뱅킹 제도, 금융 마이데이터 정책은 활발히 운영 중¹³⁾이다. 특히,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 범위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에 달하며, 2022년 말 기준 64개 사업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가입자가 6,646만 명에 달한다.

13) 오픈뱅킹은 고객의 동의 하 빅테크·핀테크에 금융회사의 고객 금융거래 정보를 7개 서비스 API, 인증·관리 API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마이데이터 역시 금융소비자의 정보 주권에 근거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정보공유 범위 조정으로
시장 경쟁 제고,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소비자보호 장치 준비

”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하는 상위 3개 업체의 앱 가입자(2,291만 명)가 전체 가입자 중 34.5%, 핀테크·IT 부분 가입자의 84.2%에 달하여 사실상 빅테크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문제는 데이터 분석능력-네트워크 외부효과-상호 연계된 활동을 기반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의 일방향적인 공유가 빅테크의 정보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를 왜곡시키거나 독과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서비스를 개선 또는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빅테크의 소비자 비금융 정보가 개인데이터 이동권에 근거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셋째, 디지털금융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소형 전자금융업자 및 핀테크 등을 위한 공유 인프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말 기준 인가 받은 핀테크·IT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상위 3개 빅테크를 제외한 25개사는 적자를 시현 중이다.¹⁴⁾ 이 가운데 2023년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 기업이 고유업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에 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ry, AML),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독당국은 2022년 4월부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IT 리스크 상시 감시 및 검사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요구사항 변화, 전자금융 관련 결제 규모 점증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적절한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전문가를 찾아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 양상과 서비스 고도화 수준,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와 디지털금융에 참여하는 비금융회사 간 이해관계 등을 참작하여 전자금융업자 등 핀테크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BNPL 관련 차주의 상환이력 및 연체율 정보, FDS 등 이상거래 분석, 금융사기 감시·식별·추적·보고, KYC(Know Your Customer) 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및 전 산업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의 확장과 연계를 고려한 핀테크 및 전자금융업자 간 API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등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또한 혁신 및 편의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는 부재하거나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을 지니는 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규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전자금융으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소외 없는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없는 매장, 현금 없는 버스 등이 등장하는 가운데, 디지털 결제 시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거부감이 있는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 새로운 전자지급 수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

14) 2022년 말 기준 인가 받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36개사, 핀테크·IT 사업자가 28개사로 이들 64개 기업의 매출 대부분은 핀테크·IT 사업자의 전자금융 수익에서 창출되고 있음. 이 중 상위 3개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25개사는 적자를 기록함(자세한 매출 현황은 본 고 p.9 [금융 마이데이터사 영업 현황] 참고)

Business Contacts

전자금융업 전문팀

Consulting Services

조재박
부대표, 디지털본부장
T 02-2112-7514
E jaeparkjo@kr.kpmg.com

이동근
전무
T 02-2112-7587
E tongkeunlee@kr.kpmg.com

김세호
상무
T 02-2112-7879
E seihokim@kr.kpmg.com

황태영
상무
T 02-2112-0490
E taeyounghwang@kr.kpmg.com

Audit

권영민
금융산업리더, B&F1 본부장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최재범
B&F2 본부장
T 02-2112-0213
E jaebeomchoi@kr.kpmg.com

김진귀
B&F3 본부장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옥정오
상무
T 02-2112-7601
E jok@kr.kpmg.com

정용훈
상무
T 02-2112-7907
E yjeong@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